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인사말

국민연금 수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입니다.



국민연금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이래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현재 가입자 2,198만 명, 연금수급자 716만 명, 기금 1,213조 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모두 연금수급자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연금수급자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언제나 신속·정확·편리하게 공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

CONTENTS

	연혁	5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6
	알기 쉬운 국민연금	8
	· 국민연금 특징	8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9
	국민연금, 질문 있어요! (Q & A)	11
	· 급여 일반	12
	·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19
	· 연금소득 과세	24
	국민연금, 알아두면 좋은 정보	27
	· 국민연금 수급자 아카데미	28
	· 노후준비서비스	29
	· 노후긴급자금대부	30
	·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서비스 활용하기	33
	· 연금 및 금융자산 보호	36
	· 국민연금증 카드	38
	· 청풍리조트	39
	· 사회적가치 실현 ‘사랑 the하기’	40
	· 국민연금 인스타툰(고객감동 사연)	42
	· 청렴한 국민연금	44



1987 ~ 1994

공단 출범 · 국민연금제도 시행

- 1986.12. 국민연금법 공포
- 1987.09.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 1988.01. 국민연금제도 시행(10인 이상 사업장)
- 1992.01. 사업장 적용 확대(5인 이상 사업장)
- 1993.01. 특례노령연금 최초 지급



1995 ~ 2000

공단 위상 강화 · 전 국민연금 시대 도래

- 1995.04. 기금운용연구센터(現 국민연금연구원) 설치
- 1995.07. 농어촌지역 가입 확대
- 1999.01. 조기노령연금 최초 지급
- 1999.04. 도시지역 가입 확대(全 국민 연금 시대)
- 1999.11. 기금운용본부 설치
- 2000.10. 텔레서비스(1355) 첫 개통



2001 ~ 2010

국민 신뢰도 향상 · 제도 안정기

- 2003.01. 감액노령연금 최초 지급
- 2003.07. 사업장 적용 단계적 확대(1인 이상 사업장)
- 2007.07.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
- 2008.01. 완전노령연금 최초 지급
- 2008.04. 노후설계서비스(CSA) 사업 시행
- 2009.04. 국제업무센터(現 국제협력센터) 신설



2011 ~ 현재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의 도약과 전주 시대 개막

- 2011.10.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시행
- 2014.07. 기초연금 지원업무 수행
- 2015.06.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주 이전
- 2015.12.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 2017.02.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 2023.12.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1천조 원 사상 첫 돌파
- 2024.11.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 명 돌파

1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2024년 12월 말 기준)

37년
국민과 함께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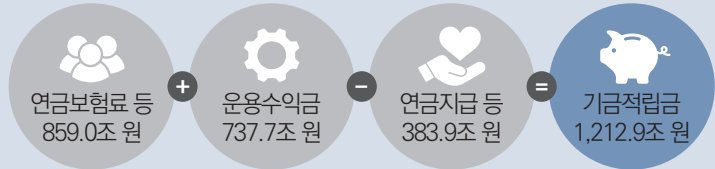
1988년,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큰 꿈을 안고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역사입니다.



**1,212조
9천억 원**

국민연금
기금적립금

737.7조 원의 운용수익금 포함 1,596.8조 원을 조성하여 383.9조 원을 연금지급 등에 지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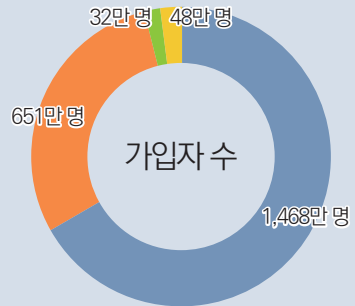


2,198만 명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18~59세 인구의 73.5%가 가입하여 안정되고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의 핵심 제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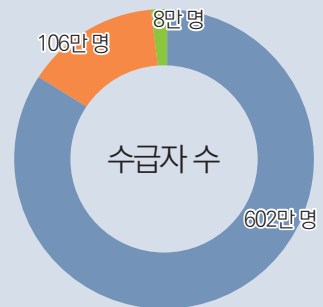
716만 명

국민연금
수급자 수

■ 노령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

노후를 위한 노령연금,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한 장애연금, 그리고 가입자 등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 연금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53.3%가 국민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1월
물가변동률 반영

매년 1월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변경합니다.

- '23년 5.1% 증액, '24년 3.6% 증액, '25년 2.3% 증액

25일
국민연금 지급일

신청하신 계좌번호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

30일 이내
변동사항 신고

받으시는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공단에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신고

연금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 재혼 또는 입양·파양(유족연금) ▪ 소득활동 종사(노령연금·유족연금) ▪ 장애 상태 변경(장애연금·유족연금) ▪ 연금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상 급여(보상) 또는 손해배상금을 수령(장애연금·유족연금)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번호) 변경 ▪ 수급 계좌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부양가족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 혼인, 이혼 ▪ 자녀 출산 또는 입양·파양 ▪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상태 변경 ▪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 상태 변경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번호) 변경

※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 있고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반환(이자가 가산될 수 있음)하셔야 합니다.

※ 공단에서는 정확한 연금지급을 위해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을 전화, 출장 등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신고	공단 홈페이지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부정수급 신고
	모바일앱	메뉴 ▶ 가입지원·신고센터 ▶ 국민 신고 ▶ 부정수급 신고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세요.

이용시간 평일 9:00 ~ 18:00

2 알기 쉬운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받은 연금보험료를 재원으로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특징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노령·장애·사망 등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연금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평생 지급되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생존하는 동안 평생 지급되며,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장애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최초 연금 지급 이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여 매년 1월 조정하여 1월~12월 적용

연금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상률	0.4%	0.5%	2.5%	5.1%	3.6%	2.3%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급개시 연령 생일 다음 달부터 매월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종사 유무에 따라 지급되며,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구분	요건
노령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 ·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감액
조기노령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지급 · 청구 연령에 따라 70% ~ 99.5%를 지급(1개월마다 0.5%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가 소득이 있는 업무¹⁾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A값²⁾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노령연금액의 1/2 한도)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5.7.29. 전에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률(10%~50%)을 적용

- 1)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근로소득금액의 합산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누었을 때 A값을 초과하는 경우
- 2) A값: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5년 기준 3,089,062원)

〈출생연도별 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수급개시 연령(국민연금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 분할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년 ~ 1956년생	61세	56세 ~ 60세
1957년 ~ 1960년생	62세	57세 ~ 61세
1961년 ~ 1964년생	63세	58세 ~ 62세
1965년 ~ 1968년생	64세	59세 ~ 63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 64세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장애 정도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1~3급은 연금, 장애등급 4급은 일시금)

유족연금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아래의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	연령요건	장애요건
배우자(사실혼 포함)	연령 및 장애 요건 없음	
자녀	25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 2023.9.14.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 부모 또는 조부모의 연령은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규정(9p)에 따름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규정(9p)에 따르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부터 청구 가능
(다만, 60세 도달 이후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재가입 불가)

사망일시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 2021.6.30. 이후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고,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



3 국민연금, 질문 있어요!



급여일반

- ①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②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연금을 받는 계좌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 ④ 연금을 받고 있는데 수급권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⑤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⑦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연금(노령·장애·유족)

- ⑧ 노령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⑨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⑩ 배우자와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⑪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⑫ 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생기면 연금액이 달라지나요?
- ⑬ 유족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⑭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⑮ 교통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장애연금·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⑯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연금소득 과세

- ⑰ 국민연금만 받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 ⑱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 ⑲ 국민연금 수급자를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⑳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이 변경된 경우 언제 경정할 수 있나요?

1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연금종별 지급률을 곱한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연금액 산정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1.29(A^1+B^2)(1+0.05n^3)/12$

[1.29: '26년 이후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n: 20년 초과 가입 월수]

- 1) (균등 부분, A값)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
- 2) (소득비례 부분, B값)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 3) (가입 월수, n)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가입 월수

■ 지급률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 가산
 장애연금: 장애등급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유족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한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 2023.9.14. 이후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부모의 연령은 급여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규정(9p 참고)에 따름

※ (부양가족연금 부지급 급여) 소득종사기간의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등급 4급, 반환사망일시금

※ (부양가족연금 비대상자)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는 없음

※ 2025년 기준: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연 200,160원

2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안정성, 수익성 측면에서도 우수하여 길어진 노후를 준비 하는데 적합한 수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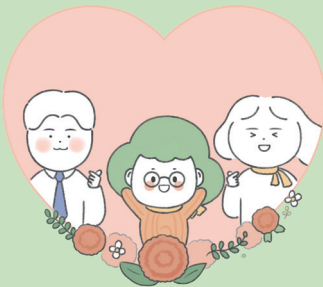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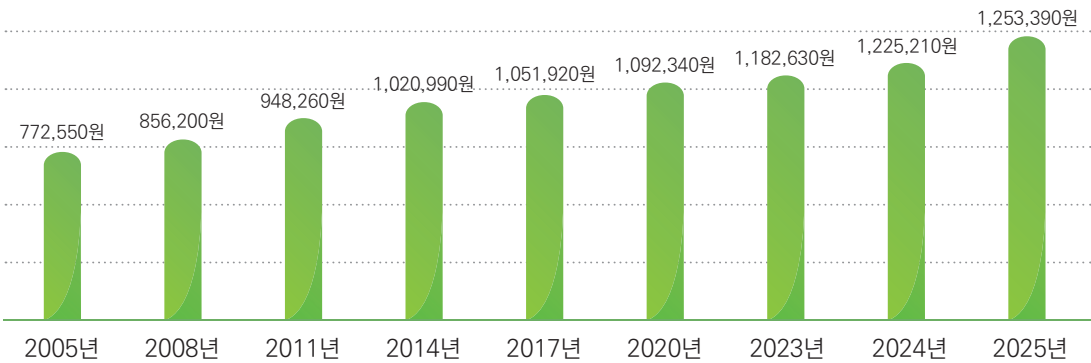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받는 연금액이 확정 되어 있고,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 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합니다.

〈연금액 인상률 연혁〉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상률	1.0%	1.9%	1.5%	0.4%	0.5%	2.5%	5.1%	3.6%	2.3%

실제로 2005년도에 최초 월 77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던 분이 2025년에는 월 125만 원을 수급하고 있어, 최초 수령하고 20년 후 48만 원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까지 평생 받을 수 있으며, 사망 후에는 생계를 유지한 배우자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금액 인상 사례〉



평생 월급 국민연금! 최고 연금액은?

가장 많이 받는 분은 매달 얼마를 받을까요?

(2024. 12월 기준)

노령연금: 299만 원* ※ 부부 수급자 합산: 531만 원

* 지급연기 미신청: 259만 원

장애연금: 219만 원 유족연금: 148만 원

3 연금을 받는 계좌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고객센터(1355, 유료),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앱, 지사 방문 등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 계좌변경은 매월 급여지급일의 **6일 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신청하기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신고·신청 -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현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연금수급자 (*장에 4급,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 처리절차 즉시
- 인증 필요

상세보기 신청하기

◆ 국민연금 전용계좌(안심통장)를 이용하시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 급여는 별도의 일반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 급여는 월 185만 원 이하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을 받고 있는데 수급권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수급권 확인을 위해 공단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7p 참고)

◆ 수급권 변동사항 확인 예시

- (연금액 증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추가, 퇴직 등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 (연금액 감소) 일정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노령연금)
- (수급권 소멸) 사망, 재혼(유족연금), 파양 등
- (지급정지) 일정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조기노령·유족연금)
1년 이상 소재 불명일 때 등

* 2025년 3,089,062원(A값)

공단은 수급자가 연금을 잘 받고 계신지, 수급권에 변동사항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직원이 직접 출장, 전화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5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로 이주하시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해외송금도 가능합니다.

공단은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해외 체류 사실 및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해외 이주 시 현지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도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해외수급자 수급권 확인 절차〉



- ◆ **수급권 확인서 발송** 해당 분기에 생일이 있는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수급권 확인서 발송
- ◆ **확인서 등 제출기한** 1차 제출기한일(해당 분기 첫째 달 말일)
2차 제출기한일(해당 분기 둘째 달 말일)
※(예시)2분기(4월·5월·6월생)▶(1차 기한)4월30일까지, (2차 기한)5월31일까지
-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모바일 팩스, 비대면 수급권확인 서비스 모바일앱

주 소 (Address)	· (국내/In Korea) (우)0603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국제연금지원센터(논현동,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 (해외/Overseas) (06039) 3rd Floor, NPS Bldg., Dosandae-Ro 128 Gangnam-gu, Seoul, Korea
팩스 번호 (FAX No.)	· (국내/In Korea) 02-3485-2931 · (해외/Overseas) 82-2-3485-2931
비대면 수급권 확인 모바일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서비스” 검색 후, 앱*을 설치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 앱(App) 이용 시 국민연금 NPS 번호, 생년월일, 본인 여권 필요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가 해외이주 시 매년 수급권 확인을 통해 연금이 계속 지급됨

6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 분	내 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¹⁾)이 선정기준액²⁾ 이하 1)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2)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2025년 기준)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나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급여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최대 342,510원 ▪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분 또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음
신청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음 ※ (예시) 1960.5.3. 생은 2025.4.1.부터 신청 가능
지급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사전 신청의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매월 25일(토·일요일, 공휴일일 때 그 전일)에 지급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모바일 신청: 「복지로」(https://m.bokjiro.go.kr) ▪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유료)

추가로 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단독가구로 수급하는 자’에 해당하면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때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 재산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

7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습니다.



■ 국민연금 기금 조성

(2024년 12월 기준)



2024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약 1,212.9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737.7조 원의 운용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제도 도입 시 '낮은 보험료 - 높은 급여 체계'로 출발했으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구조의 변화, 현 가입자의 복지에 대한 배려, 국가재정을 비롯한 후세대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소진 문제에 대처할 예정입니다.

■ 기금운용의 원칙

국민연금공단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과 다음 원칙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금운용 성과

국민연금 기금은 1988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2024년 12월까지 737조 7천억 원의 운용 수익, 누적 평균 수익률은 6.82%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 기금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 장기재정 전망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국내외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을 반영하여 미래의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금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세계로 나아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해외 대체투자 주요 현황)



빠르게 성장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외 랜드마크 부동산, 우량 인프라 자산 등을 발굴하며 세계적인 연기금으로서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연기금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 금융시장 모니터링, 해외 투자 기회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뉴욕, 런던,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에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노령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수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연기신청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수급개시 연령이 63세인 경우 최대 연기종료일은 68세 생일임

지급연기를 신청하면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 연기는 연기 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기간의 매 1개월마다 0.6%(연 7.2%, 5년 연기 시 최대 36%)의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또한 2015.7.29. 이후 연기를 신청하는 분부터는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연기 신청으로 연금액이 늘어날 경우 연금소득세, 기초연금액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본인의 경제 상황, 건강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연금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

9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 ☞ 부부가 가입하면 각자의 노령연금은 각각 지급
- ☞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한 급여를 지급

10 배우자와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5년 이상 실질적 혼인 관계를 유지했던 이혼한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② 전(前)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③ 전(前)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 중일 것
- ④ 분할연금 청구하는 본인이 수급개시 연령(9p 참고)에 도달할 것
 - ※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을 균분하여 지급하며,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외적으로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12.29.*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분부터는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거주불명 기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2016.12.29.부터 2018.6.19.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에 의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2024.5.30.이후 급여분부터 적용)

11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개시 연령 전에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수급개시 연령(9p 참고) 도달 5년 전부터 연금을 일찍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5년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임(21p 참고)

이 경우 일정 수준(연 6%, 최대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 수급개시 연령(9p 참고)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시) 1966년생은 59세에 청구 시 수급개시 연령(64세)보다 5년 먼저 수급하게 되므로 30% 감액

☞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12 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생기면 연금액이 달라지나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9p 참고)부터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노령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으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5년 이후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임

* 월평균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종사(근무)한 월수로 나눈 금액

** 2025년 A값: 3,089,062원(매년 변동)

〈소득종사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 구간별 감액표〉

(감액 한도: 노령연금액의 최대 1/2)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감액산식	월 감액 금액
1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5만 원 + (초과소득월액-100만 원) × 10%	5만 원 이상~15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5만 원 + (초과소득월액-200만 원) × 15%	15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30만 원 + (초과소득월액-300만 원) × 20%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초과소득월액-400만 원) × 25%	50만 원 이상

* 2015.7.29. 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는 종전법(10%~50% 연령별 감액률)을 적용

(예시) 64세 노령연금 수급자가 매월 100만 원의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고, 근로소득(공제전 기준) 월 458만 5천 원(연 12개월 동안 총급여액 5,502만 원)이 있는 경우

☞ 매월 977,290원 연금액 수령(1,000,000원 - 22,709원)

〈 감액되는 월연금액 계산하기 〉

- ① 근로소득공제 후 월평균소득금액: 3,543,250원(42,519,000원 ÷ 12개월)
= (총 급여액 5,502만 원) - {1,200만 원 + (1,002만 원 × 5%)} = 4,251만 9천 원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4천 500만 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 + (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A값의 초과소득월액(3,543,250원 - 3,089,062원(2025년도 A값)): 454,188원

③ 노령연금 월감액금액 = 454,188원 × 5% = 22,709원

※ 공단은 확정신고된 과세자료에 따라 사후정산하므로 정산금 또는 추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음

(홈페이지·모바일앱)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모의 계산 서비스

(경로)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 신고서 작성하기 ▶ 수급자 월평균 소득 계산기

수급자 월평균 소득 계산기


소득활동연도 2025 ▼

근로소득 (총급여) ① 원

사업(부동산임대)소득 (소득금액) ② 원

종사월수 ③ 개월

➔
계산하기



- ① **근로소득(총급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급여의 합 입력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 제외**
- ②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입력
- ③ **종사월수** 근로(사업)기간 입력

계산하기 클릭!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 및 월 감액금액 확인 가능

13 유족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 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 최초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지급을 정지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사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해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5년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임(21p 참고)

다만, 수급권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2023.9.14.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5년 3,089,062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정지
☞ 사망 후 최초 3년간 지급 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

14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가입자(였던 자) 사망 당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당시 입양·파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

* 2023.9.14.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 일정 요건(국민연금법 제73조)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

15

교통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장애연금·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기본적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신청서류 외에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판결문, 합의서 등)하셔야 합니다.

※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비서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하면,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사유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게 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부상 또는 사망으로 손해배상금 수령 시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16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추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양가족연금 대상 요건 >

* 자녀, 부모는 연령 또는 장애 요건 등이 있음

부양가족의 범위	연령요건	장애요건
배우자(사실혼 포함)	연령 및 장애 요건 없음	
자녀	19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23.9.14. 이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 적용 ※ 부모의 연령은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에 따라 조정(9p)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 2025년 기준: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연 200,160원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때에만 인정합니다.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이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 명이 두 명 이상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으며,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을 받으면 부양가족 비대상

17 국민연금만 받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본인 기여금)에 대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시 1차 연도 과세대상 연금액부터 순차적으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정부24,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가까운 공단 지사,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발급이 가능

- ☞ 장애·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연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
- ☞ 2002년 이후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시)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을 차감한 266만 원(연금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 과세대상 연금액별 연금소득금액 예시 〉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 원)	연금소득금액
350만 원	전액	0원
450만 원	350만 원 + (450만 원 - 350만 원) × 40%	60만 원
516만 원	350만 원 + (516만 원 - 350만 원) × 40%	99만 6천 원
770만 원	490만 원 + (770만 원 - 700만 원) × 20%	266만 원
1,000만 원	490만 원 + (1,000만 원 - 700만 원) × 20%	450만 원
1,500만 원	630만 원 + (1,500만 원 - 1,400만 원) × 10%	860만 원

*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 연금액 구간별 신고 방법 〉

과세대상 연금액	신고 방법
연 350만 원 이하	전액 연금소득 공제되므로 종합소득 신고할 연금소득금액 없음
연 350만 원~ 770만 원	노령연금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소득금액을 합산하여 5월 중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연금소득금액이 미미하여 연금소득으로 인한 세액적 영향도는 높지 않음
연 770만 원 초과	노령연금에서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노령연금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 2 이상의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합산한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

※ 사적연금(개인연금저축 등)은 연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에 해당되어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제외 가능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 202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종전기준 연간 1,200만 원 이하)

19 국민연금 수급자를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이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수급자가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 60세 이상이면 가능

20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이 변경된 경우 언제 경정할 수 있나요?

연금액 변경 처리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 이후 관할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경정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따른 연금액 정산, 수급권 내용변경 등으로 과년도의 연금소득이 변경되어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경정 하시는 경우 **내용변경 처리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 이후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경정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신고대상자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하여 **당해 연도 내에 연금액을 정산받는 경우, 다음 해 2월 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본인이 직접 경정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환급되지 않음)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참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로그인(인증필요) → 증명발급 → 자주 찾는 증명발급 메뉴
- 정부24(www.gov.kr):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검색
- 국민연금 고객센터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지자체 무인발급기

4 국민연금,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국민연금 수급자 아카데미
- 노후준비서비스
- 노후긴급자금대부
-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서비스 활용하기
- 연금 및 금융자산 보호
- 국민연금증 카드
- 청풍리조트
- 사회적가치 실현 '사랑 the하기'
- 국민연금 인스타툰(고객감동 사연)
- 청렴한 국민연금



NPS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연금,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든든한 연금을 만들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 아카데미

국민연금 수급자 아카데미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노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체험 및 노후생활(재무·여가 등) 교육을 제공하여 연금 수급자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

참여 대상

60세 이상 국민연금(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 누구나 1회 참여 가능

주요 활동

디지털 교육	노후생활 교육	현장 체험
스마트폰·키오스크 사용법, 교통·숙박 예약 앱 활용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제공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교육 제공 * 예시) ·재무: 상속·증여, 건강: 치매 예방·댄스 ·여가: 미술·제빵, 대인관계: 웰다잉·봉사	디지털·노후생활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 제공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공모로 선발하여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매년 2~3월경에 게시되는 ‘국민연금 수급자 아카데미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어 수행복지관에 직접 신청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일정: 기관 선정(~매년 1월경) → 참여자 모집(~매년 2월 중) → 교육 제공(3~9월)



✓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노후준비 상담, 교육 및 관계기관 연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종합재무설계·노후준비 상담·교육 신청

-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csa.np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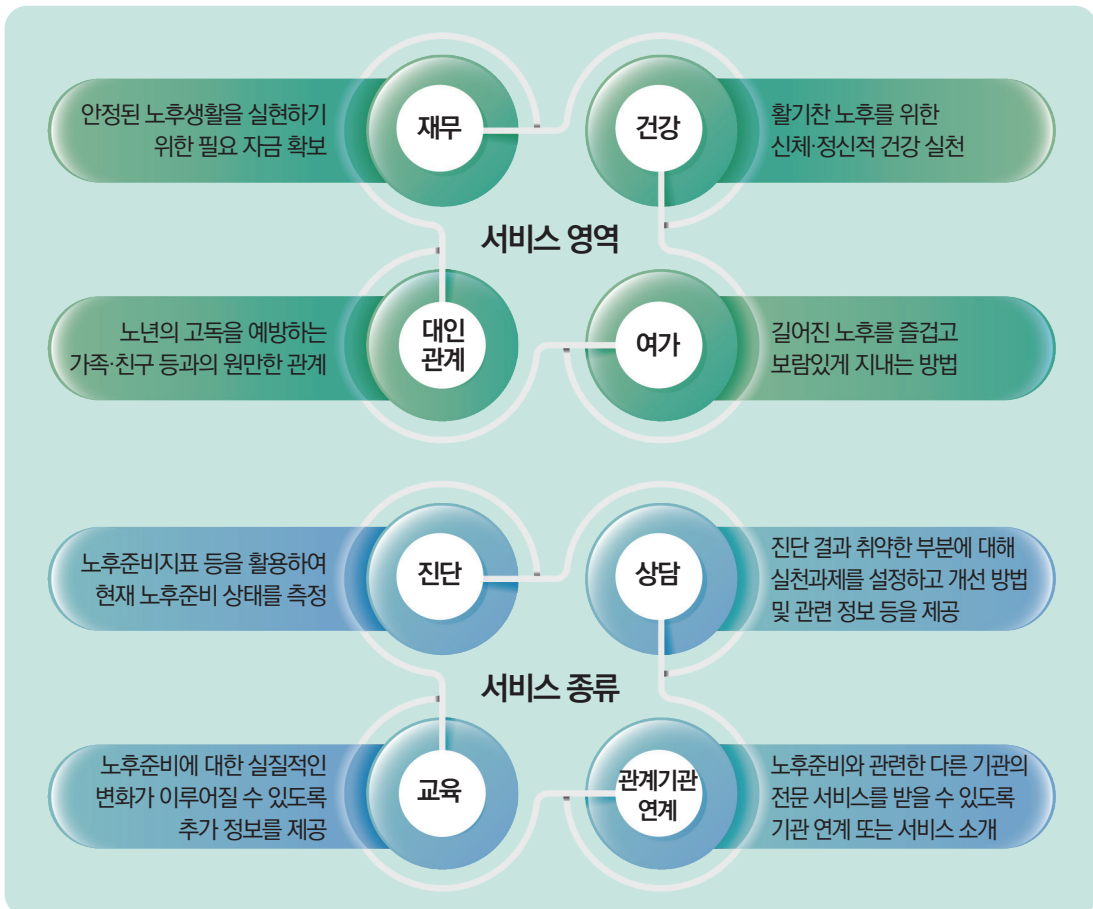
◆ 내연금 알아보기(9종의 공·사 연금 통합조회)

-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csa.nps.or.kr) → 재무진단
→ 내 연금 알아보기(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유튜브

-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다양한 영상으로 제공

〈 한눈에 보는 노후준비서비스 〉



✓ 노후긴급자금대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 노령연금 · 분할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1급~3급) 수급자

신청제외 대상

- 국민연금에서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총당 중인 자
- 장애등급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 송금자
- 위·변조 등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아 부당 대부 처리된 자 중 상환완료일부터 3년 미경과자

대부금액 및 상환

- (대부금액) 실제 소요 비용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 원) 이내
- (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연체이자율은 이자율의 2배)

* 2025년 2분기 이자율 2.69%

- (상환기간 및 방법)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1년 또는 2년, 연 단위로만 선택 가능)을 선택 시, 최장 7년 이내
 - 월 상환원리금은 연금 월액의 1/2 이하로만 설정 가능
 - 매월 연금 지급일에 자동이체나 연금급여 원천공제로 대부금 상환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 상환 가능)

대부금 지급

- 대부 심사 후 대부 적격 확인된 수급자에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 ※ 현금이나 가족 등 타인 명의 계좌 및 국민연금 전용계좌(안심통장) 지급 불가
 - ※ 특히 압류된 계좌로 지급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 방법

-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로 방문하여 신청(모든 대부용도)

국민연금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

- 주택 전·월세 보증금(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및 전입신고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내 곁에 국민연금 APP 다운로드



Android



iOS

대부용도별 신청기한

- 주택 전·월세 보증금: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용도별 기본서류

(※ 신청 시 기본서류 외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용도	기본서류	
공 통	본인 신분증(본인 지참), 대부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자동이체 납부 또는 연금 공제신청서 (공단 신청 서식)	
주택 전·월세 보증금	①유형	신규·자동 재계약 •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 ※ 임대인과 통화하여 계약 사실을 추가 확인함
	②유형	간편 대부신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전입 신고 완료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③유형	공기업 또는 민간 건설사 임대아파트 • 주택 전·월세 계약서
※ 미등기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배우자·부모·자녀가 소유한 주택인 경우, 건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 * 건물용도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재해 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시군구청장 발행) 또는 화재증명원 (소방서, 119안전센터발급)	

〈 유의 사항 〉

- 매년 대부금 예산 범위 내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전 신청자격, 대부용도,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유료) 또는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서류로 중복 대부는 불가하며 신청 당시 대부 가능 금액이 남아 있더라도 대부금 지급 후에는 추가 대부가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하세요.
- 위·변조 등 허위 신고, 임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소에 전입신고 불이행 등이 발견되면 부당대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원금 전액 즉시 상환, 대부 이자율의 2배인 연체이자율 적용, 거치기간 없이 연금액 1/2 강제상환, 3년 대부 제한 등 적용)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국민연금SNS

국민연금 SNS 팔로우 하고,
일상을 함께해요!

금주임

사원증을 메고
사위한다는
열정과다 신입사원

연대리

댓글을 사랑하는
5년차 인스타그램
담당자

연부장

연금제도 설명을 좋아하는
40대 직장 선배!
(다소 어려 보이긴 함...)



인스타그램

공단 업무 이야기부터,
일상 공감툰까지!



유튜브

직원 브이로그 등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만나보는 국민연금!

페이스북

카드뉴스로 쉽게 보는
국민연금 100% 활용법



카카오 플러스 친구

나누고 싶은 국민연금 혜택,
메신저로 손쉽게 공유!



ON AIR 국민연금 온에어
국민연금 SNS 콘텐츠
한 눈에 확인하기!



웹진 정기구독

NPS 웹진 「내 곁에 국민연금」
정기구독 신청하기

블로그

국민연금 소식,
가장 빠르게 만나보기!



「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신청, 연금액
조회 등 100여 종의 서비스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마이페이지-정보수정에서 등록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서비스 활용하기

수급자를 위한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주요 서비스

- **신고·신청**: 수급권 변동확인 신고(서류 제출), 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안내문 수령 방법 신청, 수급권 연기(재지급)신청,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등
- **조회**: 수급권 내용변경통지, 연금액 인상안내, 연기연금 신청자 예상연금액 등
- **증명발급**: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등

신고·신청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수급권 변동확인 신고(서류 제출)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div style="margin-bottom: 10px;"> <p>🔍 조회</p>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p>🗨️ 증명서 발급</p>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p>📄 신고·신청</p>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p>👤 노후준비</p>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p>🏠 가입지원·신고센터</p>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p>🏠 고객센터</p> </div> </div>	<p>연금청구/수급자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일시금 청구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연금급여 상담예약 신청 기초연금 상담예약 신청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해외송금 신청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권 소멸 신고 급여수급권 포기/회복 신청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li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수급권 변동확인 신고(서류제출) 마이데이터 신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급권확인서를 받았는데, 공단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② 국민연금 모바일앱에 로그인 후, '신고·신청' - '수급권 변동 확인 신고(서류제출)' 메뉴를 선택하세요. ③ 모바일앱에서 서류 제출이 가능한 업무인 경우에만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목록에서 해당 업무를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⑤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 제출하실 서류를 첨부하세요. ⑥ 보내기 버튼을 눌러 등록하세요. (마이페이지 - 신고신청내역에서 제출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	---	---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수급권 변동확인(신고) 서류 팩스 보내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팩스</p> <p>팩스 보내기는 국민연금의 신고·신청을 위한 서비스로 공단에만 팩스 전송이 가능합니다.</p> <p>① 공단 팩스번호입력</p> <p>직접입력 지역입력 지사/부서선택</p> <p>팩스번호 <input type="text" value="-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조회</p> <p>팩스번호를 입력해 주세요.</p> <p>② 발신자 정보</p> <p>휴대전화 <input type="text" value="- 제외하고 입력하세요"/></p> <p>③ 증명자료</p> <p>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추가</p> <p>0 / 100MB</p> <p>취소 보내기</p> </div>	<p>어플 실행 후 왼쪽 하단 팩스 아이콘 클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팩스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지사를 선택하세요. ② 발신자 번호를 입력하세요. ③ 확인서, 신고서, 증빙서류 등을 이미지로 첨부하세요. ④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지사로 전송됩니다.
---	--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연금 수령액 인상 안내 조회 하기

(경로) 로그인 > 조회하기 > 연금수령액 인상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입니다.

로그인

이런서비스 찾고 계신가요?

조회하기

예상연금조회 등
언제 어디서나 조회

신고·신청

추납보험료 납부 등
방문없이 간편하게

증명발급

가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까지

노후준비

내연금 한눈에보기,
노후자금 간편진단 등

연금수령액 인상내역 조회

연도별 연금수령액 인상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전년도 연금수령 이력이 있는 연금수급자
- 처리절차 즉시 조회
- 인증 필요

상세보기

조회하기

※ '연금 수령액 인상 안내문'은 국민비서 사이트에서도 신청·조회가 가능합니다.

증명발급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증명서 발급하기

(경로) 로그인 > 증명발급 > 이용량순으로 발급 가능 증명서 목록 표출 ※ 증명 발급 16종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입니다.

로그인

이런서비스 찾고 계신가요?

조회하기

예상연금조회 등
언제 어디서나 조회

신고·신청

추납보험료 납부 등
방문없이 간편하게

증명발급

가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까지

노후준비

내연금 한눈에보기,
노후자금 간편진단 등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 수급자가 연금 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된 세금 내역 확인 가능하며, 주로 세금 신고, 금융 기관 제출, 소득 증빙 등에 사용

·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 국민연금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주로 소득 증빙, 금융거래, 관공서 제출 등에 사용

※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은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안내문 이메일 서비스 신청하기

안내문을 보다 더 빠르게 받아 볼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한 **이메일(E-mail) 서비스**를 지금 바로 등록하여 신청해보세요!



① 국민연금공단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입니다. **로그인**

대분류: 신고 · 신청
중분류: 전체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이런서비스 찾고 계신가요?

조회하기: 예상연금조회 등 언제 어디서나 조회
증명발급: 가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까지
노후준비: 내연금 한눈에보기, 노후자금 간편진단 등

검색결과 29건 정렬 기준: 이용량순 | 가나다순

전자통지서비스 신청(이메일/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전화번호를 등록 · 변경하고 각종 통지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3. 연금수급권 내용변경통지서 이메일 이메일
204. 연금지급액 인상안내 이메일 이메일+우편

상세보기 신청하기

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신고 · 신청

전체 증명서 발급 조회 **신고 · 신청** 가입지원 · 신고센터 인터넷 납부서비스

대분류: 신고 · 신청 중분류: 전체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검색결과 21건 정렬 기준: 이용량순 | 가나다순

전자통지서비스 신청(이메일/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전화번호를 등록 · 변경하고 각종 통지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국민연금 수급권자
· 처리절차 즉시 · 인증 필요

상세보기 신청하기

③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유료)로 전화 또는 지사 방문

문자 메시지(휴대전화)로 수급권 확인 서류 팩스 보내기



- ① 휴대전화로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 후 수신번호에 1600-3750을 입력하세요. * 확인서, 신고서, 증빙서류 등
- ② ①에서 촬영한 서류 사진을 이미지로 첨부하세요.
- ③ 문자 메시지 본문에 관할지사 웹팩스 번호*를 입력하세요. * 홈페이지 www.nps.or.kr 참고
- ④ 전송 버튼을 누르면 공단 웹팩스 시스템에 팩스 이미지로 접수됩니다.

연금 및 금융자산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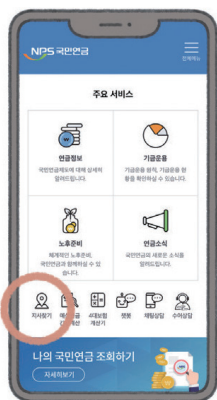
공단에서는 연금 수급자에게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계좌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개인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사칭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대처 및 금융사고 예방

진짜 국민연금공단 맞아요?

tip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지사 찾기에서
내가 연락받은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tip2. 더 의심이 된다면?

받은 연락처로 다시 전화하여 국민연금공단
안내 멘트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보이스 피싱이
아니었네~



보이스피싱엔 이렇게 대응해요!

- ①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하고 은행, 카드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 ② 스마트폰에서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한 경우 휴대전화를 바로 초기화하거나 서비스센터에서 조치를 받으세요.
- ③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은행에 제출해서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세요.
- ④ 마지막으로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피해금을 환급받으세요.



상황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번호도
알아두면 든든해요~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	
지급정지·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피싱 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피해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국민연금 안심전화(레터링) 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 및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에서 전화를 걸면 고객의 휴대전화에 발신 번호와 함께 공단 명칭이 표시되는 안심전화(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전화(레터링) 서비스란?

고객 휴대전화 화면에 “NPS 국민연금” 또는 “국민연금공단” 을 표시하는 통신서비스

- (지원) SKT, LGU+이동통신 사용자
- (미지원) KT 일부 사용자, 아이폰·피쳐폰·폴더폰
알뜰폰 사용자

휴대전화 화면에
NPS 국민연금 또는
국민연금공단 문구와
전화번호가 표시되면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 국민연금증 카드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면서 금융기능을 더하여 활용성을 높인 카드



국민연금증 카드

노령·분할·장애·유족연금을 **10만원 이상** 받고 계신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분들을 위한
선택이 듬뿍!



주요 서비스



청풍리조트 할인 교통요금 할인 다양한 문화생활

*카드사 여건에 따라 주요 서비스 변동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휴 카드사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타 사항

수급자의 카드 이용 금액에 따라 카드사가 일정 비율의 사회공헌기금을 적립하여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카드
사용



일정비율
적립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

국민연금이 드리는 호반의 휴식처

국민연금 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객실 요금을 할인해 드립니다.



이용안내

- 수급자 1명당 2실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체크인 시 신분증(수급자 여부) 확인
- 단체 행사(단체 식사 및 연회장 이용) 진행 시 수급자 객실 요금 적용 불가
- 레이크호텔(호텔형) 객실 내 취사 불가, 힐하우스(콘도형) 객실 내 취사 가능

< 2025년 수급자 객실 요금 >

(단위: 원, VAT 포함)

객실유형	레이크 호텔				힐 하우스	
	스탠다드	슈페리어	패밀리	스위트	디럭스	Jr. 스위트
정상가	180,000	230,000	400,000	540,000	340,000	440,000
주중 (65% 할인)	63,000	81,000	140,000	189,000	119,000	154,000
주말 (55% 할인)	81,000	104,000	180,000	243,000	153,000	198,000
성수기 (45% 할인)	99,000	127,000	220,000	297,000	187,000	242,000



예약 문의

- 043-640-7000 (www.cheongpungresort.co.kr)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1798



우리 삶에 가치를 더하는 국민의 연금!

국민연금공단은 '사랑을 나누고 나눔을 더하면 행복은 더 크게 자라난다'는 공단의 사회공헌 정신을 나타내는 사회공헌 브랜드 'NPS 사랑더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 가입자, 수급자, 장애인, 지역사회 등 세대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합니다.

미래세대 사랑 더하기

국민연금공단은 청년 취약계층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수급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 활동**과 저소득 수급자 및 자녀에게 대학 장학금을 지원하는 **희망있는 장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아동에게 사회보장제도 교육과 나눔 관련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나눔교실**을 통해 미래세대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아동의 학자금·주거·취업훈련 등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활동

가입자 사랑 더하기

공단은 2008년부터 취약계층 가입자 3,972명에게 약 26.9억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대부**를 통해 취약계층의 연금 제도권 편입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2월 기준

수급자 사랑 더하기

공단은 수급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권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고령·독거 등 취약계층 연금 수급자에게 식료품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마음있는 사회봉사**, 연금 수급자 대상 디지털 및 노후생활 교육·현장 체험 등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아카데미**와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독과 우울증 해소에 기여하는 **수급자 공감여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장애연금 수급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연금 마음동행**으로 수급자분들이 심리적인 충격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랑 더하기

공단은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1인 1나눔' 기금을 모아 총 5.6억 원*을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로 전달하였습니다.

* 2024년 12월 기준

지역사회 사랑 더하기

공단은 명절, 가정의 달, 호국보훈의 달, 연말 등 시기에 따라 지역사회 어르신, 장애인, 아동, 국군장병 등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단의 불용 전산장비를 수거·정비 및 재생시켜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사랑의 PC 나눔**을 통해 취약 계층 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단 임직원의 재능을 활용한 **임직원 재능기부 봉사단**을 구성하여 집수리, 장수사진 촬영 등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신속하게 피해지원 성금을 전달하는 **긴급 재난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인스타툰 (고객감동 사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신 당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국민연금공단 달성고령지사
이수진 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대리에게 사연이 도착했어요!



② 언니

우리 아빠가 벌써 연금 탈 나이가 되었다니... 너무 슬퍼 ㅠㅠ



우리 언니는 정말 유명한 F임



③ 엄마

어머, 부양가족 수당을 줘? 내 덕에 한 달에 24,000원 더 받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요!
*2024 기준 배우자 24,460원, 부모·자녀 16,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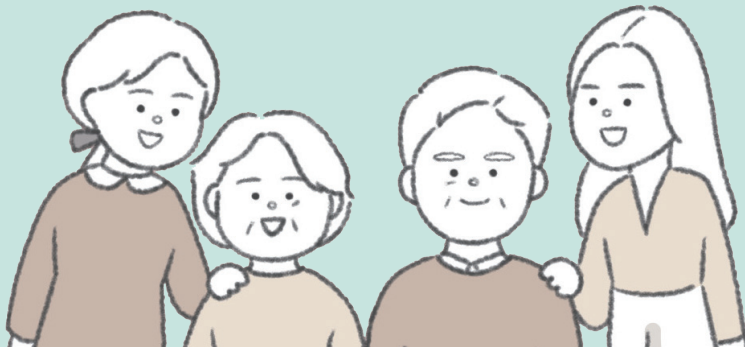
④ 아빠 - 경상도 남자

금액 맞게 들어왔는지 잘 확인해 보라!



각자 반응은 달랐지만 우리 가족 모두 아버지의 국민연금 수령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아빠 고생했어~ 축하해!



드문드문, 청렴한 국민연금이 함께 합니다.



이 선물 줘도 되나요?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충실히 준수합니다.
음료수 한 병이라도 받게 되면 즉시, 반환 신고합니다.
그러니, 부디 빈손으로 방문해 주세요. 감사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금품 등 수수 신고절차〉



업무담당자는 고객님께 정확하게 연금을 지급해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부당한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익명신고제도인 헬프라인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 ※ 외부전문업체 위탁운영으로 전문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
- ※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QR코드로 신고가능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종합청렴도 우수한 성과 달성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여러분 덕분에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으며,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의 청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값진 상들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 청렴한 국민연금, 최근 주요성과 〉

- 국민연금, 2년 연속 최고의 기금운용 성과 달성! * 2024년 기금 운용수익률 15%
 - 대통령상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경영 실천에 앞장서 지속가능경영 확산·발전에 기여 (2024. 12.)
 - 국무총리상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촉진에 공헌(2024.11.)
타 기관 증명서까지 모바일앱 원스톱 서비스로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2023.9.)
 - 그 외 수상
(국제사회보장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2024.12.)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우수기관 선정 (2022.3.)
- 6년 연속 부패 방지 시책평가 최고등급 및 5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등 공로 인정
(올해의 연기금상) Pension Fund of the Year(The Asset 誌), 7년 연속 수상
- 우리 공단 임직원은 국민연금이 노후 행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매진하고,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을 구현하는 최고로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는 공공기관의 고객만족 경영확산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고객만족도·종합청렴도 조사 참여 안내 〉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조사 대상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고객	조사 기준	만점 10점에서 0점까지
조사 기간	11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조사 방법	전화 설문조사

*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제2항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조사

조사 대상	연금 수급자(노령·장애·유족)	조사대상기준	전년도 7월~당해년도 6월
조사 기간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 방법	전화·이메일·모바일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설문조사 내용은 공단의 고객 서비스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겠습니다.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발행연월 2025년 4월

발행인 김태현

편집인 정태규

발행처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I S B N 1030-202504-PM-0158

편집·인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쇄사업소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